

November 10,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9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10. 30. ~ 11. 09.)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 10. 30.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함. 주요 안건으로는 ①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더불어민주당), ② 경제계 건의과제 2차 추진계획(기재부), ③ 디지털 집현전 추진현황(과기부), ④ 핵심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추진계획(고용부) 등을 논의함

[참고자료]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과기부] 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개선 추진

2020. 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항목 신설, ② 인증심사 단계에서 유사·중복 점검 최소화, ③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대학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면제 법적 근거 신설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ISMS 제도 개선 추진



[중기부]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개최

2020. 11. 2.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제조데이터 관리 규정인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의 초석 마련, ②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거래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제공자, 이용자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조데이터 공유 규범 마련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2020. 11. 3. 위원회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 출시, ②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 사업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③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플랫폼 택시 업계 혁신 상생의 방안 도출



[산자부]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2020. 11. 3.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② 인도는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 수용, ③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 해소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환경부] 그린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 본격 지원

2020. 11. 3. 그린뉴딜 유망기업 출범식에서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그린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②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집적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 ③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 효율성 제고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이 있음

[참고자료] 그린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 본격 지원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 11.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 10. 13.)에 따른 하위 규정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고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장사 등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감사인 준수사항 확인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 9조), ②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삭제(안 제12조), ③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면제 근거인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안 제27조) 등이 있음

[참고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0. 11. 3.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임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2020. 11. 3. 국토부는 재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어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과징금 가중·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임

> 입법예고 법안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는 2020. 11. 2. 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기한 추가 부여(안 제9조), ② 화학물질 안전정보제외대상 승인기준 설정시 고용부 의견수렴(안 제35조의2), ③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 정비, ④ 기존화학물질 조기 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 면제 등이 있음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는 2020. 11. 3. 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16조 등), ③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 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조정, ④ 정보분석심의위원회의 채용 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 등이 있음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행안부는 2020. 11. 4. 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유 확대(안 제6조), ②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③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안 제21조 및 제22조), ④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확대(안 제51조의2)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산자위]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①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 설치,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후계자 부재나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각종 지원(안 제21조) 등이 있음

[기재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으나,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으로 통신산업의 투자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이에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1%에서 5+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7)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 등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대상의 약 60퍼센트는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91퍼센트가 특정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재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주요 내용으로 ①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세후영업이익 등도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제2호 후단 신설), ②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시 발생한 매출액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③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누적된 총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순증액의 개념으로 산정함으로써 당기 증여의제이익 및 당기 배당소득과 동일기간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5항)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등13인)」

무인가 영업행위인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의 피해 범위 및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44조제1호의2 신설)

[과방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식별성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의 개인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현행법에 개인위치정보 파기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위치정보 유출 방지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23조 등)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